

영등포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7.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9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 보장(안 제5조)
-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안 제6조)
- 다.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운영(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 및 실무지원(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 3. 8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일인 2011. 9. 9일 이전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 책무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 권리를 보장 함.
- 제2장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제3장 안 제10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포함한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회의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4장 안 제21조에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위원회 활동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 스스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그 동안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시책으로 2004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 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많은 주민들이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11.3.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